

상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전쟁중에 죽거나 부상당한 타이완의 군인들에게, 그 돈의 액수는 부적절한 것이었지만, 한 사람당 20만엔씩 배상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일본군'위안부'들의 인권은 어디로 갔는가?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들에 대한 차별과 부정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고 타이완의 일본군'위안부'들은 요구한다.

45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12-1	81

일본군'위안부'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조직하다.

넬리아 산초(필리핀 LILA-PILIPINA대표)

배경

LILA-PILIPINA는 "Liga ng mga Lolang Pilipina"를 지지한다. LiLa-Pilipina는 필리핀의 일본군'위안부'와 강간당한 후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필리핀의 일본군'위안부'들의 인권과 정의 및 배상요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이것은 군위안부들의 정의를 위한 싸움을 지지하는, 필리핀에 있는 여러 조직들과 네트워크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있다.

1992년 7월 13일, Task Force On Filipino Comfort Women이 군위안부들의 정의를 위한 운동을 지지하는 전국적 조직으로 출발했다. TFFCW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기획하고,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위원들로 구성된 의회의 기능을 했다. 구성 단체는 7에서 15단체로 늘어났다. 전국의 사무국은 AWHRC와 Rayan Women's Dexk로 구성되어 매일의 운동요구를 조정했다. 2년간 AWHRC는 위안부들과 지원 활동자들의 보고와 요구를 받는 회의장을 제공했다.

1994년 5월 16일, TFFCW구성원들과 전 위안부들은 Lila-Pilipina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직은 전쟁과 갈등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필리핀의 전 위안부들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그것은 희생자 자신들이 소송을 한 첫 케이스이다. 그것은 전쟁범죄와 인권침해범죄에 관한 1907년의 헤이그 조약의 법적 기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LILA-PILIPINA와 TFFCW의 활동

1992년 10월 29일, 일본 변호사들이 위안부들을 면담하는 등 사실규명작업을 벌였다.

1993년 4월, LILA-PILIPINA는 동경의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1994년 7월 31일, LILA-PILIPINA는 일본변호사들의 제 7차 사실규명작업에 힘입어 항의집회와 총회를 했다. 여기서 단합을 위한 춤과 건강수첩 및 의료카드의 배부가 있었다.

1994년 5월 13-16일, LILA-PILIPINA는 기획과 토의를 위한 전국집회를 열었다.

1994년 6월 3일, LILA-PILIPINA 멤버들은 동경지방법원에서 열린 제 4차 필리핀 위안부 재판에 참석했다. 6월 6일에는 한국의 위안부들과 일본의 지지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700여명이 행진을 했다.

1994년 6월 25일, LILA-PILIPINA는 총회와 LOLA의 생일축하연이 열렸다. 많은 축하와 발표가 있었다.

1994년 7월 8일, LILA-PILIPINA는 러미지 쉼일을 벌였고, 이후 몇번 더 열었다.

LILA-PILIPINA는 또한 UN등의 국제기관에 활발하게 성명서를 내고 있다. LILA는 1994년 9월 13일에 일본의 UN상임이사국 취임반대성명에 참가했다. 1994년 7월 18일, LILA는 무라야마 일본총리에게 다음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 1) 아시아 센터 설립계획을 철회하라. 2) 희생자 개개인에게 충심의 사과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전쟁희생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라.

LILA-PILIPINA는 1994년 3월 12일에 동경에서 열린 '여성의 인권에 관한 아시아 법정'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법정이 진행되는 동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강간, 고문, 구금, 강제이동 및 유괴라는 끔찍한 범죄를 비난하는 성명이 나왔다. 이 성명은 일본의 '군위안부정책'을 전쟁범죄라고 규정하고 이것과 모든 다른 군대의 성적 노예화를 비판했다. 이 성명은 인도의 Devadasi제도, 일본의 성노동자 등의 여성의 매매외, 오락과 매춘을 위한 여성노동의 대대적인 수출을 지속시키는 성산업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동경법정은 또한 다음과 같은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수집, 교육/홍보, 로비활동, 희생자 지원.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제안이 나왔다. ; 철저한 조사와 자료수집, 전범의 재판과 처벌, 희생자에 대한 배상, 공공교육, 국제적 연대의 강화.

1995년 2월, LILA-PILIPINA는 LOLAS의 정의와 배상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필리핀 국가신문에 유료광고를 냈다. 제목은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위로금은 싫다. 배상하라"였다. 이 광고는 일본정부가 희생자 개개인에게 배상과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문제를 종결지으려는데 대해 LOLAS의 반대를 나타냈다. 이 광고는 이 이슈를 보다 널리 알리고 LOLAS의 요구에 강한 지지를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우리의 운동이 시작한 이래, 우리 LILA-PILIPINA는 국제법률가협회(ICJ),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등의 세계인권단체와 많은 아시아여성단체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군위안부 제도는 그 극악한 범죄에 희생된 여성들에게 수치와 불명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가져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위안부들이 고문과 인간적 모욕의 조건 하에서 성적 노동을 제공하면서 매일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안다. 50년간 일본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다. 50년간 희생자들은 아무 지지자들도 없이 그들의 상처를 품은 채 침묵속에 살아왔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이 폭력적인 기억과 함께 살고 있다. 그 고통은 아직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와 그 사회가 보이지 않게 만든 폭력인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의 운동을 추구하는 것이고, 일본의 법정과 UN을 이용해서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여성들을 강제동원했고, 이 잔악한 제도를 유치시켰다는 것을 시인하도록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도록 계속 압력을 넣어야만 한다.

우리가 일본의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금전적인 배상을 받으려는 것 뿐 아니라, 세계사회가 이 성노예화를 전쟁범죄임을 알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이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1995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 4차 세계여성대회를 맞이하여 우리의 활동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단체들을 초대하여 우리가 계획하는 워크숍과 프로젝트에 참가시키려고 한다.

아시아 전체에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높힐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는 희망과 투쟁의 목소리이다. 우리의 눈은, 객관화와 복종에 기초한 지배의 현 상황과는 다른, 세계를 파악하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눈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고통이었던 세계가 더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으로 변할 것이다.

TUBORA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사료번호
	B12-7	8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

39

줄리아 포라스(전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조직인 릴라 필리피나(Lila-Pilipina)에서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저는 올해로 66세가 되는 줄리아 파토사-포라스입니다. 저의 고향은 필리핀의 남부지역에 있는 도시, 다바오(Davao)입니다. 제 가족은 1982년에 마닐라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제 3차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하여 여러분에게 제 2차 세계대전의 생존자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일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제로 끌려간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쟁이 다가올 때 다바오에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다바오를 점령했을 당시에 저는 13세였습니다. 그 때 한 어린 소녀로서, 저는 전쟁의 잔인성에 대해, 그리고 일본군이 어떻게 여성들을 강간하고 아이들을 살해했는지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다바오인들이 사람들과 우리 고향땅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는지도 보았습니다.

1944년 제가 13세였을때, 우리집으로 군인들을 실은 1대의 트럭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 여동생은 집 옆에 있는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에서 43 Km 떨어진 이싱(Ising)이라는 곳의 한 터널로 끌려갔습니다. 터널은 군인들의 방공호로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고 얼이 빠져버렸고 이 고통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생각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 고통을 이겨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오로지 얼어붙은 한이 있을 뿐입니다.

저를 처음으로 강간한 사람은 무리상이라는 장교였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1주일에 서너번씩 왔습니다. 8개월동안 제대로 음식, 휴식 그리고 물을 받지도 못한 채 그 터널에 갇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씻을 수 있는 화장실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얼굴과 비밀스런 곳을 씻을 수 있는 물 한바게쓰였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자 저에게는 찢겨진 삶만이 남겨졌습니다. 저는 50년 이상 그 끔찍한 고통을 안고 침묵하며 살아 왔습니다. 나의 명예는 더럽혀졌지만 살아 남았습니다.

로사 루나 헨슨 (Rosa Luna Henson)이라는 최초의 증언자가 1992년 9월 일본군에게 위안부로서 강요받은 경험을 증언했을때 저는 나의 고통스런 과거가 다

시 떠올라 떨렸습니다. 그 때 저는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 용기를 내었습니다.

내 남편은 나의 과거를 밝힐 수 있게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릴라 필리피나(Lila-Pilipina)로 알려진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대책위원회에 연락을 취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릴라 필리피나로부터 보호를 경험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나의 친척과 이웃들이 내가 '위안부'라는 것을 알고 나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권과 전 '위안부'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운동에 동참하여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는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저는 집회에 참석해서 부끄러움없이 제 과거를 말합니다. 저는 모임에 나가 다른 피해자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울고 또 울고 그 고통에 벗어날 때까지 이 고통을 내 던져버립니다.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직접적인 배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간 위로금 모금 계획은 결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명예에 대한 훼손과 전쟁이 끝나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했던 이후의 고통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입니다.

일본정부가 아시아 전쟁 피해자들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정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을 통해서만 정의는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장부번호
		35

일본군위안소정책과 위안소경영사

니시노 루미코 (西野留美子)

미 리 발

일본군의 위안소설치 및 「위안부」 연행동이 강제매춘사건으로서 전후에 재판
을받은 예가 있다. 자바섬의 마타비아 (현재의 자카르타) 에서 열린 네덜란드의
BC급전범재판이 그것이다. 전후 마타비아에서 열린 군법회의에서는 자바섬의 수
마랑, 안바라와의 4해 억류소에서 네덜란드인여성 35명을 인행하여 수마랑에
「장교클럽」 「수마랑클럽」 「히노마루클럽」 「育雲莊」 등 4개 위안소를 개설했다
대해서 그 책임사, 실행사를 전범으로서 재판에 걸었던 것이다.

유엔인권위원회설의나 판보벤치의 보고에도 있는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전
후보상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자처분의 계기는 가해국과 피해국 쌍방에 있어서
회피할 수 없는 문제로 되어있다. 처벌의 문제가 「보복」 혹은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 「보외의 회복」으로서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선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면서 마타비아군지법정에서
위안소정책의 무엇이 심판을 받았는가, 누가 어떤 근거로 심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내용과 그 방향을 설정하는데서 중요하다
고 본다.

1. 마타비아 군사재판

- 피고인 13명, [] 내는 구형, ※는 죄명
- ① 육군중장-징역12년 [사형] ※매춘강제죄, 강간죄, 억류자부당취급
- ② 육군대좌-징역15년 [사형] ※부녀자를 강제매춘으로 인행한 죄, 매춘강제,
강간죄
- ③ 육군소좌-사형 [사형] ※위와 같은 3항목
- ④ 육군소좌-징역10년 [징역10년] ※부녀자를 강제매춘으로 인행한 죄, 매
춘강제
- ⑤ 육군소좌 [군외] - 징역7년 [징역10년] ※억류자부당취급
- ⑥ 육군대위 [군외] - 징역16년 [징역20년] ※강간죄, 억류자부당취급
- ⑦ 육군대위-징역2년 [징역2년] ※억류자부당취급
- ⑧ 육군소장 (曹長) - 용의사신 없어 무죄
- ⑨ 육군군속 [사정관 (司政官)] - 무죄 [징역5년]
- ⑩ 육군군속 [위안소경영사] - 징역20년 [사형] ※매춘강제죄
위와 같은-징역15년 [징역20년] ※매춘강제죄

우와 감음-징역 10년 [징역 5년] ※매춘강제죄

우와 감음-징역 7년 [징역 5년] ※매춘강제죄

<개설에서 폐쇄에 이르는 경과>

1944년 1월, 육군중장① [간부후보생대대상·남방군직속, 제16군수마량주둔 지사령관 겸임]은 억류소에 있는 2만명의 부녀자들중 100명 정도의 「지원자」를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후 수마량주둔 지사령관 [일본인] 한데서 「억류소의 부녀들을 사용한 위안소 설립의 희망」이 전해졌다. 「위안부」의 선별은 州庁측이 실행하였다.

같은 해 2월에 제16군사령부가 차지한 바타비아로 가서 위안소를 신설한 데 대해서 한모부에게 문의하였다. 이 때 「후에 문세가 인이나지 않도록 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위안소는 병참의 관할이므로 그 담당소처가 계획서를 가지고 바타비아로 가서 정식한 허가를 받았다.

이자들 속에는 경등매춘 잔치 자살한 자, 발광한 자도 있었다. 매춘을 거부했을 때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받은 자도 있었다.

같은 해 4월에 위안소는 폐쇄되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시찰을 하러 온 대좌가 강제매춘의 사실을 알고 제16군에게 폐쇄를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사실인정>

억류소로부터 연행되어 위안부로 된 약 35명의 부녀자들중 군사법정이 강제매춘을 위한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연행이라고 인정한 것은 3개억류소의 25명이다.

<판결문>

「실행된 전쟁범죄는 그 자체가 이미 심각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그것이 억류소의 극히 열악한 조건하에서 장기간 생활해 온 부인이나 소녀들에 대해서 가해지는 경우 가장 심각한 범죄의 하나로 된다.

일본의 점령당국은 이러한 부인이나 소녀들의 자유를 빼앗아갔으며…… 그녀들을 안전한 예속상태로 몰아 넣었다. 점령당국의 대리인들은 이러한 상태들을 이용하여…… 기만, 폭력,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억류소로부터 부인이나 소녀들을 연행하였다.

부인과 소녀들이 처음 저항을 한후 그것이 수용없다는 것을 배우고서 저항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그녀들이 그 후로부터는 자유의사로 매춘을 했던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들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안소들]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한 목격은……

기에서 행사된 강제력이 작용하는 범위내에서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이며 기기는 기본적인사유가 전혀 보장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위안소들의 설립과 인원확보계획 및 개업, 경영을 약간의 인성도 없이 냉혹하게 그리고 실무적으로 실시한 피고인들은 중요전쟁범죄인의 범주속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 재판과 그 판결은 주목을 끌만한 것이다. 그러나 위안소개설을 이가한 세16군이나 州庁관계자는 아무도 심판을 받지 않았고 BC급전범재판과 마찬가지로 항상 말단의 실행자들만이 진범으로서 판결을 받고 명령의 주체자가 그 책임을 면해 온 역사는 현재 세기되어있는 전후보상분계를 해진어내 있어서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증거가 가해진 위안소경영사의 실태는 군과의 관련이란 점에서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시 위안소의 경영을 위임받은 자들 속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도 많이 섞어 있었다. BC급전범재판에서는 포포수용수의 감시를 한 말단의 실행자였던 수방은 조선인이 실행에 시해진 끝에 일본국적을 잃은 후에도 그 죄만은 남이 형기를 끝까지 시내아 했던 모순과 부조리가 심기된다. 위안소정책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러한 모순을 역사식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형벌을 가하는 것 자체가 복직인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며 그를 위해서 피의할 수 없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피고에 대한 판결사실의 개요>

· 육군대좌② [유기형 15년]

「계획의 입안과 실행에 협력하였다. 부하의 군인 혹은 민간인이 위안소에서 여성들에게 매춘을 강요하는 등의 전쟁범죄 행위를 지시함을 묵인하였다」

· 육군소좌③ [사형]

「병참관계담당장교로서 위안소 개설허가를 군본부에 신청하였다. 여성들의 진원 혹은 대부분이 강제수단없는 매춘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내안한 사실, 그리고 위안소에서 여성을 압박하여 매춘을 강제하여 또한 부하의 군인 혹은 민간인이 그러한 전쟁범죄행위를 저지할 것을 알면서,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하였다」

· 민간인 [유기형 10년] ※별건이다

「1943년 9월부터 1945년 9월경까지 자마십 마타미야에서 민간인을

위해서 설립된 위안소를 경영, 이 시설에서 배준시키기 위해 여성들을 모집하고, 또는 모집시켜서 응모해온 여성이 그만두려고 했을 때에는 식량 혹은 간접적으로 압박하여 자유로이 그만둘 수 없겠끔 배준을 강제, 그 사유를 배었었다.]

2. 위안소경영자와 군과의 관련

위안소를 경영하자고 하면 민간인은 군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위안소경영을 받은 민간인은 군의 인성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또 위안소경영을 위해 도항하기를 신청한 경우 영사관경찰은 그 민간인의 신분조사를 하여 그 결과 허가된 사에게 도항하기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위안소를 군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영사관경찰이 가까이에 없는 경우에는 소속부대장 혹은 소할원병대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도항할 수도 있었다. [『渡支事由証明書』의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淸州지역에로의 도항사 취급에 관하여]

[1940년]

경영자는 「위안부」로서 징집한 여사들과 함께 군이 지시한 장소로 관용선 혹은 군의 트럭, 혹은 군의 감시가 붙은 철도등으로 수송되어 군이 마련한 위안소로 들어가 거기서 경영을 도맡아 했던 것이다.

위안소경영자의 특징의 하나로서 일본인만이 이 일에 종사했던 것이 아니라 조선인도 많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위안부」들 속에 조선인여성도 많았던 것과 관련된다. 여성들의 생활관리,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의 입자가 좋다고 판단되었던 것이라고 본다. 물론 그러한 조선인여성들도 군의 관리, 지시하에 행동했던 것이다.

한 경영자의 경우를 예들어 보아 본다. 평양(京城-서울)에서 요리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부부는 더 많이 번기 위해 처의 어동생과 함께 비마에서 위안소를 경영하려고 계획했다. 그들은 군위안소를 경영하기 위한 영업허가를 경영의 육군사령부에게 신청했다.

허가가 내린 후 그들은 19살부터 31살까지의 미혼의 조선인여성들 22명에게 전차금(前借金)을 주어서 모집하였다. 그 때 준 돈은 300~1000엔이었다. 1942년 7월에 그들은 여자들을 데리고 부산을 떠났다. 이 때 703명의 조선인여성과 90명의 일본인(경영자들 포함)이 동승하였다.

여성들이 당초에 맺은 「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 「수입」의 50%를 받는다.
- 교통비, 의료비는 군당국의 부담이 됨으로 무료.
- 식량은 군의 화물창(貨物廠)의 지원을 받아 위안소경영자가 구입함으로써

무료

오늘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책임자들을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로 엄벌에 처하는 것을 요구하여 고소장을 도쿄지방법청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정대협도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피해자 여러분들의 심정을 헤아릴 때, 우리들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대응을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여러분의 숭한 생명을 까닭도 없이 빼앗아가면서도 그 사실을 끔그리 잊은채 지나온 일본의 전후였음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특히 우리들은 정말로 오랫동안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여성단체들의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운동, 일본정부에 대한 요청·합의가 우리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증언에 나선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이 악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피해자 여러분들이 전후 반세기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군이 점령했던 각지·각국에서 속속 피해자들이 증언에 나서 유엔 인권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노력과 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태까지 한번도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니다. 처음에는 정부와는 관계없다고 발뺌을 하고, 움직일 수 없는 중기가 발견되자 말만의 사과와 조사보고를 했을 뿐 지급은 보상을 대신하는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몇푼의 돈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빼앗긴 인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부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손으로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깊이 반성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르게 전하여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반세기 동안이나 게을리 왔습니니다.

그 결과로서 아직도 이 일본땅에는 새로이 성노예로 만들어지고 신음하는 동남아 여성들이 많이 있고 헌법에 위반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사해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한은 풀리지 않는 채 남아있는 것입니다.

빼앗긴 인간 존엄성을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 여러분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일어나서서 오늘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낸 것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바로 비틀어진 우리들 자신의 인간성회복을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얼어붙은 겨울에도 땅속에 씨앗들은 봄을 기다리며 묵내 준비를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같이 피해자들의 한이 봄의 따사로운 햇빛으로 풀리는 날이 머지않아 오기를 바라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할 생각입니다.

용기있는 투쟁에 일어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들, 한국정대협회원들에게 깊이 경의를 표하며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일본의 전쟁책임을 규명해나갈 것을 다지는 바입니다.

1994년 2월 7일

전 일본군 "위안부" 에 의한 전쟁책임고소·고발 긴급보고집회에서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상표번호
3/11	BIR-1	19

24

96.

일본에 있어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의 경위와 PCA의 유효성에 대하여

아이타니 구니오 변호사

1. 일본군 '위안부' 재판의 현황

각각 108만 원으로 배상

같은 원금에 대해 재판

법정사 여러건이 위안부 재판 → 이렇다.

1. 제기된 재판

- 1) 한국태평양양회생자유족회 - 1991년 12월
- 2) 한국부산소송 - 1992년 12월
- 3) 필리핀 소송 - 1993년 4월
- 4) 재일총신도 소송 - 1993년 4월 → 내국인 재판
- 5) 네덜란드인 소송 - 1994년 1월

2. 소송의 진행관계

- 1)과 3)은 본인신문을 속행
- 2)와 4)와 5)는 주장의 단계이고, 심문은 아직 열리지 않음
- 4)와 5)은 주장의 정리와 논쟁은 비교적 단시간에 진행예정
- 2)은 진행미정

3. 주장의 요점

민법(국제법), 국제법(국제법) - 가장 큰 문제

국제법(국제법) - ~~문제~~

대장 나라의 주장은 동일되어 오고 있다. 그 요점은 아래와 같다.

1) 민법의 주장에 대해서는

- 國家無答責 (국무책임) → 민법(국제법) 문제

2) 국제법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 주장의 조약에 손해배상규정이 없는 경우 : 조약위반이 불법행위로 되는 국제관습법의 성립을 입증을 요구한다.
- 주장의 조약에 손해배상규정이 있는 경우 : 국제법에 소송절차가 없다. → 실제적 권리도 성립되지 않는다.

재판소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국제법) (국제법) 문제

- 1) 민법에 관해서는 除斥기간 (국제법) 문제
- 2) 國家無答責은 대심원이 확립한 판례
- 3) 국제법은 일본의 재판소에서는 불법행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입법동시 사건 검토

4. 앞으로의 전망

- 증거조사에 들어갈지 어떤지가 어려운 상황
 - 가형 증거조사가 있어도 결심까지는 최저 3-5년이 걸린다.
 - 원호법에 [石, 陳 재판]은 재판소에 전혀 기대불가를 증명
 - 재판소가 국제법상의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 재판소에 아예 이 문제를 해결할 의욕이 없다.
- 그러므로 재판소에서는 승소는 전혀 전망할 수 없다. 또 그 실마리 자체도 없다.

II. 일본정부의 움직임

- 민간모금 구상의 행방
- 정부 官房의 의도
- 당사자 : 운동단체의 반발
- 전망 ---- ?

→ 3개 기관의 영향력
PCA 장악에 의해서
PCA 단결이 있음
→ (Pol. ...)

III. 입법화운동에 대하여

1. 변호사에 의한 [배상기금 법안]의 시안이 작성되었다.
 - 1994년 9월 스즈키 변호사에 의한.
 - 정부의 전액 출자, 민간모금도 받아들인다. 원칙은 1) 개인에 대한 지불, 2) 피해에 대한 배상임 3) 사회의 의사를 수반하는 것임
 - 〈----- 네덜란드, 영국의 포로. 민간억류자의 의향을 대변한 것
2. 방향
 - 운동단체(재일지원회, 필리핀 지원회, 자치노)가 찬동과 기대를 하고 있음
 - 전후책임을 확실히 하는회의 태도가 애매하다.
 - 국회의원, 사회당, 내각외정심의실 등은 흥미를 갖고 있다.

이유 - 운동체는 재판에서의 호소도가 전보다 약해져서 운동의 핵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사회당, 내각외정심의실의 이유는 일부를 차용하고, 민간모금구상에 이용할 수 없을까 하고 기대.
3. 앞으로의 대처
 - 현단계에서 이것을 공표하여 입법화운동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
 - 민간모금 구상이 안되게 되는 단계라면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한 법안제시의 의미는 있다.

- 법적 책임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면 PCA밖에 없다는 것을 전전하는 것이 좋다.
- 예를 들어서 1) 법적 책임을 명시한 입법을 하라.
- 2) 그것이 안되면 PCA에 판단을 구하라.

IV. PCA의 유효성

법적 책임을 인정받지 못함 → 해당국에 상충권한이 있는가?
 → 내국법인가? → 국제법인가?
 (26년 1103) 이성호 판례
PCA가 국제법인가?

1. 국내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
 - 재판도, 정부의 자기승인도 둘다 불가능
 - 제시되는 해결책은 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
 -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한 제안이 아니면 전진할 수 없다.
2. 국제법상의 쟁점을 개인이 처음으로 다룰수 있는 자리가 된다.
 - 국제법상의 당사자성의 확립
 - 국제법상의 소송절차로서 확립 -- 개인의 실제법적 청구권의 성립
3. PCA의 판단의 활용
 - 정부도 국제적 판단에 따름으로서 국제이해를 얻을 수 있다.
 - 법적 책임이 판정되면은 그것을 전제로 한 해결책이 가능하다.
 - 예산조치 및 자민당 등의 설득도 가능해진다.
 - 챔피언 소송으로서 다른 해결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다.
 - 그 위에서의 법안화가 가능 -- 문제점은 피해자의 인정방법. 기간

V. PCA의 전망

- 법적 근거로서는 ICJ의 보고를 활용하여 승소가능
- 개인의 피해인정의 문제
 - 처벌의무를 중심으로 한 立論 -- 일본정부가 가장 반박 어려운 점
 - 최대문제는 일본정부의 동의
 - 개인이 국가와 동일한 위치에 서는 것에 대한 혐오감
 - 위로부터의 반발: 처벌의무에 관해서
 - 일본의 재판소의 반발: 최고재판소가 가장 상위의 것이다.
- 기타

위안고

1111 1533사 2017년 11월 16일
1533사 1533사 2017년 11월 16일

PCA의 운동적 의미와 정대협의 향후 계획

지 은 희(정대협 PCA특별위원장)

1994년 11월 16일은 정대협이 결성된지 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3일에 행하여진 일본대사관 앞의 144번째 시위는 일본대사관의 요구에 따라 동원된 전부경찰의 봉쇄로 전부경찰을 사이에 둔채 양쪽에서 마이크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한일 양정부의 입장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모습이었습니다.

〈진상규명, 범죄사실 인정, 국회결의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명기, 위령비 건립, 책임자처벌〉 이렇게 7대 요구를 내걸고 할머니들과 한덩어리가 되어 싸워온 지난 4년의 운동의 성과는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성과는 역사의 피해자이면서도 개인적 명예를 잃어지고 숨어서 살아오신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깨닫고 당당하게 역사의 증언자로서 나서게 된 일입니다.

둘째는 은폐되었던 일본군과 일본정부의 비인도적 범죄가 UN 등 국제사회에 폭로되어 일본정부가 국가에 의한 성노예제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1월 22일 발표된 ICJ의 보고서는 이 점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법률가협회의 보고서에는 일본정부는 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명백히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과 1965년 한일협정의 '청구권'에는 불법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 침해에 관한 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는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한 것을 함께 풀려고 하는 세계여성의 연대가, 특히 아시아 각국 여성의 연대운동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일본의 여성운동과 한국의 여성운동이 그리고 양국의 양심적인 운동세력이 자국의 민주화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여성인권보장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적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일본정부에 의해 거부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일본정부 스스로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 2차 조사보고서에서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어들여 위안부로 삼는데 정부가 관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행동이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비겁하고도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경제대국이라는 국제적 위치를 이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사죄, 정신적, 경제적 배상을 하지 않은채 이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

고 있습니다. 더우기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활용하여 약간의 시혜적 위로금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는 천박한 책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 어디에도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진정한 사죄의 마음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우리 정대협은 이 시점에서 일본정부에게 PCA의 중재재판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정대협이 25번의 회의를 거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한데는 몇가지 중요한 운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정부가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비인도적 범죄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일본의 범죄행위와 이에 대한 책임을 세계에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PCA재판을 통해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실천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군성노예문제를 PCA에 가져가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는 여성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행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또 가해국이 세계강대국의 한나라일지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선례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가 다시는 역사속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할머니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일본정부의 물질적 회유에 굴하지 않고 일본정부에 맞서 스스로의 존엄성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 이긴 당당한 모습을 역사에 남기고자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6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병들어 계십니다만 '내가 싸우다 이기지 못하면 내 딸세대, 내 손녀세대라도 나서서 우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할머니들의 말씀대로 PCA재판을 통해 일본의 범죄행위를 밝히고 당당히 사죄받고 배상받는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넷째, 만약에 국제중재재판을 일본이 받아들인다면 일본이 적어도 국제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가진 국가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각국간의 관계가 평화적 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국정부가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선적으로 택한 정대협의 PCA중재재판 요구마저 만약 일본정부가 거부한다면 일본 정부는 세계사속에서 거둬낼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역사적 과오가 세계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진정한 참회와 법적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세계속에 그리고 아시아내에서 '부유한 후진국'으로 영원히 남게될 것입니다.

정대협은 이런 의미를 가진 국제중재재판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첫째, 국내에 PCA운동의 기반확대를 위한 작업입니다.

1) 법조인 특히 변호사들에게 이 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PCA변호인단으로 참여하게 하는 일입니다. 현재 37명의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전후보상특별위원회가 활동중이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에는 PCA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입니다.

2) 국회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선전작업입니다.

민주당내에 정신대대책의원모임이 구성되어 활동중입니다.

3) 한국정부의 PCA운동에 대한 지원확인입니다.

외무부는 정대협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두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1965년 한일협정에 책임자처벌문제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진행중인 배상청구소송 등에 관해서는 깊은 관심과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할 것이고, PCA재판에 대해서도 협조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일 22220--422)

4) 1992년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수요시위의 대중적 확산방식 모색입니다.

5)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와 PCA지지를 위한 지방순회강연 및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적 선전작업의 강화입니다.

1) 10월 9일부터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없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를 위한 국제적 서명운동

2) 중국 무한에 버려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초청 증언집회 추진 (1995년 3월에정으로 추진중)

3) 현재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전쟁중에 가해진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린다차베즈씨의 조사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쿠마라 스와미씨의 조사, 심각한 인권침해범죄자에 대한 불처벌문제 특별보고관인 조아네씨와 귀쎌씨의 조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한국방문초청 및 토론회 계획

4)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것입니다.

95년 8월 30-9월 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 4차 세계여성대회와 NGO 포럼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계인권대회에서 개최되었던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재판'과 비슷한 규모와 내용의 행사에 참여하는 이외에 아시아국가, 또는 보스니아 여성들과 연대하여 '전쟁중의 성노예에 관한 여성포럼' 등을 며칠에 걸쳐 개최하는 안 등이 논의중입니다.

셋째, 아시아피해국간의 연대강화입니다.

아시아 모든 피해국이 참여하는 아시아연대회의를 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인 린다 사베즈 시의 방한 시기에 맞추어 개최하는 방안 논의중

넷째, 사실을 은폐하려는 일본정부에 맞는 진상규명작업의 촉진입니다.

- 1) 일본군 위안부 문제백서 출간
- 2) 할머니들의 2차 증언집 발간(인쇄 대기중)
- 3) 중국 무한의 버려진 할머니들의 증언록(출판사에 넘겨진 상태)
- 4) 할머니들의 현실과 운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중

정대협은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원칙에 맞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본정부의 변함없이 계속되는 반성없는 태도와 망언들 때문에 때로는 기운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들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켜 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역사의 정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협정과 PCA

65

배금자 변호사

1. 일본정부의 주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에 대하여 개인배상책임을 추궁하고 있는데 대해 일본정부는 사실적인 면과 법률적인 두가지 면에서 모두 책임회피를 도모하고 있다.

사실적인 면에서는 현재까지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관헌의 주도적 관여를 부인하고 있고, 법률적인 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은 65년 한일협정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1993. 3. 13.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표명한바 있고, 이에 뒤이어 일본의 관방장관이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법적으로는 한일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보상문제를 포함하여 1965년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는 발언을 하였다.

한국정부는 대통령의 이 말뜻에 대해 얼마후 "피해자 개인의 보상요구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대통령이 이미 즉흥적으로 표명한 이러한 견해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일본정부에게는 좋은 구실이 된 것은 틀림이 없다.

일본정부는 거듭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배상책임을 없으며 65년 협정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PCA로 가는 경우에도 이러한 태도는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65년 한일협정으로 과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65년 한일 협정의 내용

1951년 제 1차 회담을 시작으로 제 7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장장 14년이 걸려서 1965. 6. 22 체결된 한일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이하 65년 협정이라고 한다.)

이 협정에서 일본이 종결론의 근거로 들고 있는 조항이 바로 제 2조 제 1항이다. 그 내용을 보면, "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이 협정으로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불 10년간 지불, 차관 2억불 7년거치 20년 상환조건 10년간 제공, 민간신용 3억불 제공을 하였다.

이 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재산 및 청구권 속에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도 포함된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 협정으로 종결되지 않았다고 본다.

3. 65년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이유

가. 8개 항목청구권과 65년 협정의 과정

65년 협정은 한국정부가 제 1차 회답에서부터 일본에 제시한 8개항목의 청구권을 포함하여 완전히, 최종적으로 종결하기로 하였지만 실제 그 협상과정을 보면 청구권에 관한 토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8개 항목 청구권도 일본의 식민지배 및 전쟁범죄로 인한 민형사책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8개 항목청구권은 (1)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된 地金의 반환 (2) 1945년 8월 9일 현재의 일본정부의 對朝鮮總督府債務의 辨濟 (3)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振替 또는 送金된 금품의 반환, 청구 (4)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지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었던 법인의 在日재산의 반환 (5) 한국법인 또는 한국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한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6) 한국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에 관한 항목 (7) 前記 諸財産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諸果實의 반환청구 (8) 前記의 반환 및 결제의 개시 및 종료시기에 관한 항목이다.

이상의 8개 항목청구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일본국이 한국인에 가한 전쟁범죄나 비인도적 범죄와 관련한 민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전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청구내용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되어 두개의 국가로 분리되므로써 일본정부가 한국에 돌려주어야 할 재산의 변환이나 한국국민에 대하여 미변제한 채무의 변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8개 항목청구권에 대해서도 1차에서 4차 회답까지는 전혀 토의조차 이루어진바 없고, 5차 회답에서 비로소 토의가 시작되었으나 일본정부가 확실한 증거관계가 법률관계에 기한 것만 변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측의 8개항목 청구권은 증거관계 및 법률관계가 불확실하여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세세한 청구권에 기한 주장을 포기하게 되었다. 즉 6차 회답때부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이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게 되자 종전의 청구권주장을 포기하고, '전체역수'와 '명목'에 대한 타협으로 협상의 방향을 180도로 전환한 끝에 일본정부와 간에 일괄적으로 정치적 타협을 이룩한 것이다. 이것이 65년 협정인 것이다.

1994. 11. 22. 국제법률가협회(ICJ)도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배상문제는 한일조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이르는 과정과 조문의 용도와 문맥으로 보아서 불법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한일조약의 청구

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65년 협정은 청구권협정을 假裝한 경제협력자금지원협정이며, 일본국이 전쟁 및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한국민에게 입힌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서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배상금을 책정하여 종결하기로 한 협정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전쟁범죄에 대한 민형사책임은 양국정부간에 전혀 언급도, 마음에도 없었고, 종결하기로 한 협정의 내용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나. 외교보호권의 포기

일본정부는 65년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모든 개인배상청구가 법률상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결국 한국정부가 한국민인 피해자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배상청구권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며 이것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법상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고 일본정부가 종래 자국민에게 취해온 기본인식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私인의 재산, 권리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국가의 의사나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국제법상 국가가 자국민의 권리 또는 청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에 의한 권리구제가 국내법상 모든 수속을 다하여도 부당히 거부된 때에 개입할 수 있는 외교보호권에 기한 경우뿐이다. 따라서 자국민의 권리가 타국의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본국이 개입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도 국가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외교보호권만이고 자국민의 권리나 청구권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가령 한일협정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한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종결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민의 권리, 청구권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한데 지나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8.27. 일본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65년 협정으로 한일양국에 의해 존재하고 있던 자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하여 해결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한일양국이 국가로서 갖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고, 개인청구권은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킬수 없습니다"고 답변한바 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그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서는 달라졌지만 자국민에 대하여는 시종일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국민의 在韓 재산 및 청구권의 포기를 한 것과 일소 공동선언으로 일본국민의 소련에 대한 재산 및 청구권을 포기한 것과 관련하여 일본국민이 일본정부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물었을 때이다.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조약에 의해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나라가 갖는 국제법상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불과하여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일뿐 국민의 재산권,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65년 협정으로 종

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모순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외교보호권에 불과하여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며 피해자 개인의 실제적 청구권은 하등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65년 협정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인 것이다.

다. 배상을 받은바 없다.

한국정부는 일본으로부터 65년 협정의 댓가로 받은 자금으로 생긴 원화자금으로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본군에 의해 군인, 군속, 노무자로 소집되거나 징용된 자 중에서 1945.8.15이전 사망자에 한하여 사망자 1인당 30만원(19만엔)을 보상하여 총액 92억원(58억엔)을 보상하였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의 5.4%에 해당하는 자금이다. 일본군 '위안부'는 물론이고 강제연행자, 피폭자, 사할린잔류자, 재일조선인, 징병징용생존자, BC급전범 등 수많은 피해자들은 그 자금에서 한푼도 받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최근들어 한국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을 일이 있을뿐 일본정부로부터 보상금 또는 배상금 등 어떤형태의 물질적 지원을 전혀 받은바가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0년 들어서 처음으로 공개되기 시작하였고, 일본정부가 이에 대해 국가와 군의 부분적 개입 및 강제성을 시인한 것은 1993.8.2. 제 2차 진상조사 발표때이다. 그 후로는 현재까지 진상조사도 피해자에 대한 사죄도 법적 책임인정도 피해배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에 대한 재산적, 인격적, 신체적 피해회복은 전혀 된바 없으며 현재까지 그 피해는 계속 방치되어 왔으며 심화되어 오고 있다.

현재까지도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65년 협정당시 한국과 일본정부가 향후 역사상 발굴되어 새롭게 문제제기가 될지도 모를 모든 청구권의 문제까지 미리 포함하여 종결하기로 했다고 할 수 없다.

라. 불처벌에 따른 배상문제 — [C]

일본은 전후 극동군사재판에서 몇몇 전쟁지도자들이 전쟁범죄인으로 재판받았지만 조선인에 대한 죄는 전혀 재판받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인이 일본인과 같이 BC급 전범으로 몰려 피고인으로 재판받았다.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범죄로 재판받은 것은 바타비아 네덜란드 군사법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책임자 9명이 사형을 당한 것이 전부였을 뿐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전쟁범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국가는 국제법상 책임자 처벌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전쟁범죄는 국제법상

시효가 없다. 그런데도 일본은 현재까지도 단 한명의 일본군 '위안부' 책임자도 스스로 처벌하지 않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1993.2.8 일본검찰청에 제출한 책임자처벌 요구 고소, 고발장의 접수마저 거부하여 책임자처벌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전세계에 천명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범죄자 처벌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 온 것 자체로 부터도 일본정부의 배상의무는 계속해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ICJ의 보고서에도 가해자를 불처벌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배상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4. PCA에 의한 해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정부가 65년 협정으로 외교보호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한국정부에게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또 일본국내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해 보았지만 재판에 의한 해결은 지금까지의 재판경과와 사법부의 위치에 비추어 볼때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들로서는 더이상 기다리거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되지 못한다. 일본정부에 대하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보았지만 일본정부는 처벌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표명했고, 일본정부에게 스스로의 책임이행을 촉구해 보았으나 일본정부는 이런 저런 이유만 대면서 법적 책임은 부인하고 오히려 동정이나 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직접 국제법상 주체로서 나설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은 국가와 개인간의 국제분쟁해결이 가능한 PCA에 의한 중재판정을 받는 길이다.

일본정부는 국제법질서를 존중한다면 그동안 아무런 힘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 주장해 온 65년 협정에 의한 종결론만 외치지 말고 65년 협정에 대한 해석도 받아보고, 전쟁범죄인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잔존하는지에 대해 권위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판단을 받는 길을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일본정부는 이제 더이상 65년 협정을 傳家의 寶刀처럼 사용하지 말고, 그 뒤에 도피하는 비겁한 짓을 그만두고 국제법질서를 존중하는 상임이사국을 희망하는 국가의 위신에 걸맞게 국제적 판단을 받는 길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소고(小考)

----- 배상액, 배상방식과 관련하여

박 원 순 변호사

1. 서론

- 김칫국부터 마시는 일?

종래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자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축적되어 왔다. 아직도 이들 희생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이에 대한 완강한 거부로 그 이상의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예컨대, 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배상액은 얼마가 되는가, 또는 배상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현실적으로 사망한 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에게는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 유족도 없이 사망한 희생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의 문제들이 잇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는 "김칫국부터 먼저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다. 아직 일본정부는 '떡'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학자들이나 활동가들 사이에 배상액이나 배상의 지급방식 등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그동안 전혀 이에 대한 논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급들과 여러가지 합리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배상액이나 배상의 방식을 논의하여 보는 것이 반드시 무의미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 일본정부는 배상액이 아니라 위로금의 형식이라도 지급할 용의를 표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현실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본정부에 대한 책임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도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이다.

특히 한일 양국의 전후배상운동단체들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제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의한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들의 논의가 대단히 중요해졌다. 중재재판소에 의한 해결에 일본정부가 동의할 경우 국제중재재판소는 그 재판의 과정에서 단순히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이 있는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배상액수와 지급대상,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심리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구체적 문제의 논의는 중재재판소에 의한 심리와 결정에 커다란 참고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종래 제시된 배상액수

첫째, '카텐 파커'라는 미국의 변호사가 제시한 액수이다. 이 변호사는 희생자 1인당 1백만불의 배상금을 제시하였다.

둘째, 미국의 어느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캠페인 단체가 제시한 액수이다.¹⁾ 이 단체는 각 희생자들에 대하여 \$ 20,000,000씩을 지급하라고 일본정부에 요구하였다. 이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들이 강제적으로 납치되어 강간을 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간 1'회당 \$ 500씩 계산하여 그 같은 액수를 산출하고 있다.

셋째, 정대협 의 입장이다. 정대협은 개인별 금액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대한 배상으로 4조엔을 요구한 바 있다.²⁾ 정대협에서도 이 금액의 정확한 산출근거나 배상액의 지급방식, 그 사용 용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힌바는 없다.

넷째, 일본내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청구된 금액이다. 이귀분, 심미자, 문옥주 할머니의 경우 소송대인을 통하여 청구된 금액은 각 금 2천만엔이다. 이 청구금액의 산정역시 엄밀한 계산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상징적인 액수로 보아 청구된 것이다.³⁾

3. 합리적 배상액의 산정

가. 배상액 산정의 유례(類例)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인 전상자들과 그 유족에게 지급한 연금의 액수를 참고할 수 있다. 몇년간만 그 액수를 뽑아보면 다음 표와 같다.⁴⁾ 물론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연금에 불과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로서의 군위안부 희생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년도	사망자 유족연금	4급 상이자 연금
1952	10,000엔	36,000엔
1953	25,200엔	48,000엔

1. Asian American Association for Reparation for Sexually Abused Women by Japanese Government during World War II, Inc. 라는 단체에서 작성 배포한 팜플렛 참조

2. 1994. 5.6자 정대협 기획위원회 회의자료 참조

3. 高木健一 등의 변호사가 제기한 李貴粉 외 5인의 소장

4. 이 자료는 Japan Civil Liberties Union, Report on War Responsibility of Japan for Reparation and Compensation, April 1993에서 인용한 것임

1954	27,600엔	48,000엔
.....		
1969	119,000엔	199,000엔
1970	135,000엔	214,000엔
1971	160,000엔	274,000엔
.....		
1990	1,645,400엔	2,630,000엔
1991	1,706,700엔	2,728,000엔
1992	1,772,400엔	2,833,000엔

한편 오키나와 전투에서 20만명 이상이 죽었고, 그 가운데 약 반수가량(9만 4천명으로 추산)이 오키나와 섬의 주민들이었다고 파악된다. 이들 희생자들의 유족들에게도 일본의 '은급법'(恩給法)에 의하여 연금이 지급되어 왔다. 참고로 1986년 현재 그 연금액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⁵⁾

- * 유족은급금 : 1. 우선권이 있는 수급권자가 한 사람일때 - 매년 1,511,000엔
- 2. 우선권이 있는 수급권자가 n명일때 - 매년 1,511,000+(n-1)5,400엔
- 3. 수급권자가 우선권이 없을때 ----- 매년 5,400엔
- * 조위금(일시 지급금) ----- 50,000엔

일반적으로 일본 법정에서의 정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수도 배상액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소화 1년에서 5년까지 5개년간의 정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액이다⁶⁾.

금액	건수	금액	건수
100엔	1	700엔	2
200엔	1	1,000엔	1
250엔	1	1,500엔	1
300엔	1	2,000엔	1
400엔	1	평균	계
500엔	7	577.5엔	20

여기에 화폐가치의 변동율을 곱하면 현재의 정조권 침해 위자료 액수를 산출할 수 있다. 위의 각 사건의 경우 각각 사정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조권 침해로 인한

5. Sayoko Koders, "Compensation to Civilian War Victims on Okinawa", The Japanese Annual of International Law, No. 31, 1988, p. 76

6. 大野文雄, 矢野正則, 性の裁判記録, 法政書房, p. 213

배상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다음 케이스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주고 있어 일본법정의 태도를 알 수 있다.⁷⁾

인용액	원 인	청구자측의 사정	피청구자의 사정	선고일시
50만엔	여관에 끌고가 강간	당시 중3, 14세	대졸대만인 월수 3만엔	소화 29년

한편 일반적인 사망사건에 있어서 교통사고 등 생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일본의 사법부는 사망자가 가장인 경우 1천만 내지 1천 6백만엔, 독신의 남녀 또는 주부이면 9백만 내지 1천 3백만엔, 유아나 노인이면 900만엔 내지 1천 2백만엔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한다.⁸⁾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일 뿐 나머지 다른 재산권 침해나 일실수익 등은 별도의 문제이다.

나. 배상액 산정의 범위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손해는 단순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강간으로 인한 배상에 그칠 수 없다.

1953년의 독일의 연방보상법(The Federal Indemnification Law of 1953)은 생명의 상실, 육체와 건강에 대한 손실, 치료비용, 임금의 감소, 자유의 상실, 체포, 재산적 손실, 차별적 과세, 경제적 또는 직업적 승진기회의 박탈 등 온갖 종류의 실질적 손해를 모두 배상의 대상으로 삼았다.⁹⁾

이렇게 본다면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의 경우에도 체포, 감금, 강간의 일련의 연속적 범죄로 인한 자신의 피해, 그 가족들의 고통, 자유의 상실, 육체적 그리고 건강상의 부상과 그 손해, 일본군 부대와 그 장병들을 위해 행한 노역에 대한 보수,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고통으로부터의 위자료 등이 모두 배상의 범주에 포함되고 배상액수의 산정기준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다.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의 특성에 따른 정당한 배상액

유례라고 든 사례들은 대체로 간통, 강간, 강제외설, 혼인빙자 등의 경우이므로 종군

7. 위 같은 책, p. 214

8. 김명수, 생명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p. 83

9. Nicholas Balabkins, West German Reparations to Israel, Rutgers University Press, New Jersey, 1971, p. 153

위안부 피해자들 경우와는 사실상 차원을 달리한다. 정조를 침해한 데 따르는 일본국내의 손해배상 케이스들을 종합하면 단순히 1회의 강간만으로도 가해자의 월급의 16개월치를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4급 정도의 상이군인들의 경우 매년 3백만엔 가량의 연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들이 4급 상이군경의 대우만 받더라도 1억 5천만엔(3백만엔/50년)은 된다.¹⁰⁾

일본군 '위안부'들의 경우 납치, 감금상태의 지속, 간음희 횡수, 그 이후의 육체적 정신적 파괴, 결혼의 불가능과 자식 출산의 불능 등 인생의 파멸 등 그 고통과 피해의 정도를 일반 정조침해의 경우나 일반적인 부상의 경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단순히 간음의 횡수나 억류 기간동안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볼 것이다. 개인적 사정이 각각 다르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일본군 '위안부'들의 경우 아무리 경미하고 짧은 기간의 '위안부' 생활이었다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청춘과 그 이후의 삶의 황폐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나머지 여생이라도 편안하고 존엄한(decent)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배상액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이들이 그런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안정된 주거의 확보, 일상생활비 보장, 치료비, 문화비의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주거비의 경우 서울 소재 30평의 아파트가 최소 전세금이 1억은 되고, 최저 생계비가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치료비와 문화비로 30만원, 기타 사망시의 장례비 등을 감안하면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달 200여 만원은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의 잔여 여생의 기간이 평균 10년으로 본다면 2억 4천만원(200만원/12/10)이 이들의 인간다운 여생을 지낼 수 있는 최소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의 금전적 도움은 실로 절박한 상황이다. 한국정부가 매달 보조하고 있는 15만원의 생계지원비만으로는 최저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이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권을 그들을 생존기간 동안 주기로 했지만 실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 일부 희생자들은 '강제군대위안부피해자대책협의회'를 조직하여 일본정부와 직접 담판을 벌여 배상을 받겠다는 등의 조급증을 보이기도 하였다.¹¹⁾

10. 전쟁이 끝난 1945년부터 내년이 50년이 지나게 되고 중간이자는 제외하고 단순계산 한 것이다. 물가의 변동이나 연금액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고 1992년의 연금액만 가지고 역산(逆算)한 것이다.

11. 이 단체는 1994. 5. 3자 성명에서 기존의 쟁쟁인단체들을 향하여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모금을 착취" 한다는 비난과 함께 "일본정부를 상대로 직접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러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며 단시간내에 그러한 완강한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없다. 국제중재재판소로 일본정부를 이끌어 내는 일도 국제적 압력과 기준으로 희생자 개인에 대한 배상과 원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편의 하나일 것이다. 이 작은 시도는 바로 그 과정에서 참고자료의 하나가 되었으면 다행이겠다.

이러한 이들의 노력도 아무런 결실없이 수포로 돌아갔다.

UN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경위와 PCA의 유효성

변호사 도츠카 에츠로

(참고자료)

- ① UN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1. (법률시보 1월호/199호 예정)
- ② 동상 2.
- ③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근의 동향과 전망 - UN을 중심으로
- ④ ICJ 최종보고서 제9장에 대해서
- ⑤ 「일본이 모르는 전쟁책임」 - 「위안부」와 강제노동조약 (법학세미나-12월호1994)

ICJ 최종보고서의 충격

- 1) ICJ 보고서 (초고) 는 공표전인 11월 중순, 일본여당 3당의 「위안부」 문제소위원회에 NGO를 통해서 전달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한 때 (11월18일경) 무라야마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 지급안은 보류되었다. 그러나 일주일후인 11월 25일, 동 소위원회는 무라야마안을 수락하는 역전이 일어났다.
- 2) 그 이유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정보에 의하면, 외무성관료가 정치가들에게 「ICJ는 적당한 단체이다. 일본정부에 만나지도 않고 최종보고서를 냈다」 라고 하거나 이가라시 관방장관이 11월 22일 저녁, 신문기자에게 「ICJ 최종보고서를 일본정부는 안받았다」 고 하는 등 허위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본외무성관료는 ICJ 최종보고서 (초고) 를 9월2일에 직접 받으면서, 이것을 일본정부 수뇌나 여당 3당의 정치가들에게 숨기고 있었다. 즉 정보조작을 하여 일본정부수뇌를 자유롭게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치가들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정치가들은 교묘한 관료들에 의해 쉽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ICJ의 평가

- 1) ICJ는 9월2일 최종보고서 (초고) 를 일본정부 제네바 대표부에게 전달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코멘트를 하면 그것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공표하기로 되어있었다. 또 ICJ 조사단 멤버는 1993년에 외무성을 방문했을 때도 아시아국의 다카노씨 외 1명과 면회하여 일본정부의 입장을 질문했다고 보고서에는 자세하게 쓰여져있다.

자료①에 자세하게 쓴 것처럼, ICJ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법률가들의 UN자문기관 (NGO) 이다. 「그 최종보고서는 국제적인 제1심판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문서」 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번의 최종보고서의 공표는 전세계에 널리 보도되었다.

현재의 정세분석

- 1) 한국의 인구의 반인 2300만명의 여성을 대리하는 한일 PCA변호단 (100명을 넘음) 이 발족한 것은 큰 전진이다.

피해자는 조선반도전체에서 나왔다. 한가지 문제에 대해 피해자는 일체이다. 남북조선, 한국전체의 피해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의의는 크다. 이 문제에서는 남북의 NGO는 항상 상호 일치하고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세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 2) 금년의 UN인권소위원회에서는 UN의 NGO 약 15개가 일치하여 피해자를 지지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지지한 의의는 매우 크다. 운동방향이 세계적으로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ICJ도 국제중재의 방향을 지지했다고 생각한다.
- 3) 지금까지 국제법하에서의 일본의 국가책임의 전문적 연구, 논의는 전혀 없었다. IFOR의 권고는 있었지만 힘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번 ICJ의 최종보고서가 그 내용에 있어서 IFOR의 법적 주장을 대략 지지하였으므로 앞으로의 UN에서의 법적논의는 이것을 기반으로해서 진행될 것이다.

- 4) 이 문제에 대해서 UN의 지지를 얻는 것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캐나다의 일본군에 의한 포로피해가 UN에서 「1503수속」을 사용하여 보상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1991년 UN인권소위원회는 제2차대전중의 문제에 관한 UN의 권한에 관한 의문에 의하여 「동 대전중의 보상문제에 관해서는 1503수속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의를 하여 결정을 공표했다.

그래서 필자가 위안부문제에 관해서 1992년2월의 UN인권위원회에 호소했을 때에도 「UN에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 일본의 반론이 장해가 되었다.

그러나 그후, 이 문제를 1503수속이 아니라 노예문제로서 제기했기 때문에 역전이 가능해졌다. 역전이 가능했던 것은 정대협이 호소가 세계의 단체에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증언 및 일본역사가, 특히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에 의한 역사적 사실의 발굴작업에 의해 진상구명을 진전시킨 것이 큰 공헌을 했다. 이러한 활동이 WCC, IED, IFOR, IADL, Liberation 외의 UN NGO의 활동을 가능케했다.

이것이 금년 5월 UN현대노예제부회의 중재권고, 금년8월 un인권소위원회의 「전시노예개연구」에 관한 결정, 「불처벌문제연구」에 관한 결의로 이어졌다. (자료

③참조)

앞으로의 운동방향

- 1) 중재합의서 성립을 향한 운동

ICJ최종보고서가 권고하고 있는 것 처럼, 일본에는 법적책임이 있기 때문에 즉시 그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 대한 개인배상을 위해 권고와 같은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혹시 일본이 이것을 하지않고 법적논쟁도 계속된다면, 이 문제는 일한간에서 백년이 지나도 미해결 상태로 남을 것이다. 양 민족간의 증오가 계속되고 세계 평화에도 큰 장애가 된다.

일본의 재판은 길고 또 판결이 나와도 일본인 재판관의 판결은 한국민들에게 신용을 얻을 수 없다. 공정한 제3자인 국제재판소에 의한 신속하고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는 결정만이 이 분쟁을 종료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설명한 경우, 이 견해에 반론한 일본인은 없었다.

2) 일한 정치가에 대한 적극적 행동의 필요성

적어도 일본의 관료에 의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일본의 관료는 「천황의 관리」였던 시대의 전통을 이어받고있으며 지금도 정치가가 아니라 관료가 일본을 통치해야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관료는 지금까지의 방법과 생각을 바꿀려고 하지 않는다. 그 위에 「한푼이라고 새로운 예산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신헌법하의 정치에서는 선거된 정치가가 일본의 정책을 결정해야하며, 관료는 민주정부에 고용된 손과 발에 지나지않다. 정치가는 전례가 없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또 해야한다. 예산의 결정도 정치가의 역할이다. 「개혁」은 정치가의 일이다.

그러므로 정치가, 모든 정당에 대한 전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ICJ보고서의 법적 문제 등을 가지고 정치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관료에 의한 정보조작을 그대로 해서 정치가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3) 법적논의의 필요성

일본에 관련되는 인권문제로서는 「위안부」 문제는 최대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에 관한 일본의 국가책임논의는 거의 행하여오지 않았다. 필자는 이 2년반 동안 매주와 같이 이것에 관한 논문을 공표해왔다. 그러나 외무관료이외에는 이것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알았다.

일한협정에 관해서도 실제도 전문을 읽은 사람은 적다. 그래서 일본외무관료의 정치적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일한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일본사람들이 믿어버린것이 아닌가.

전전, 일본인은 「군사 제1주의」였다. 전후는 「만사가 돈」의 세상이되어버렸다. 명예, 생명, 자유, 신뢰, 우호라고 하는, 재산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버린 것이다. 재산문제에 관해서 결착하면 「그외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국제법위반의 범죄에 대해서는 정대협과 피해자에 의한 고소, 고발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ICJ최종보고서는 거기에 착목하여 「인권침해의 문제는 일한 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일본정부, 시민에게 충격을 준 것이다. ICJ최종보고서, 특히 「법적문제 (제9장)」에 관해서 팔리 번역을 출판하고 정치가, 법률가,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논리를 상세하게 확립하고 일본의 국가책임에 관한 논의를 국민적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이 필수과제이다. 이것이 가능하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다. (자료②④)

ICJ보고서가 침묵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들이 연구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강제노동조약위반」에 관해서는 금년 ILO가 이것을 적용하여 선례가 생겼으므로 확신을 갖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ILO에 대한 통보의 권리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에 밖에 없으므로, 일한의 노조에 대한 지원 요청을 서두

를 필요가 있다.

법적논쟁이 활발해지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 경우, 우리들은 「그렇다면 국제중재로 조기해결을 하자」고 말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유효한 반론은 없다. 그러므로 국제중재 요구는 일본정부의 반론을 봉쇄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되어오고 있다.

- 4) UN에서의 최근의 전진은 이미 설명했다. 현대노예제부회, 인권소위원회의 연구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은 힘들다. 또 UN 인권위원가 조사를 시작하도록 압력을 강하게 넣을 필요도 있다. 이것은 조사의 권한이 있으므로 일본정부에 대해 가장 강한 충격이 될 것이다. UN에 대한 협력의 방법으로는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계자를 일본 등에 초청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방법도 있다.

NGO는 국제적 NGO도 국내 NGO도 일치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활동은 이제 최종단계에 들어서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근의 동향과 전망—UN을 중심으로
(1994년후반)

- 8월 UN인권소위원회 (제네바)
현대노예제부회 보고서의 보고 (상설중재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권고)
- 9월 한국변호사협회회장 성명 (국제중재에 의한 해결 지지)
- 12일 NGO부리핑
- 19일 UN인권소위원회 「전시 노예제」에 관한 결정 (차베즈위원)
- 동일 동 현대노예제에 관하여 「불처벌문제에 관한 연구」의 결의
- 31일 무라야마 구상 「평화우호교류계획」 「민간모금에 의한 견부금 (위로금) 지불」
- 9월 2일 ICJ프레스 레리스 (정부에게 최종보고서 (초고) 송부, 권고의 골자공표)
- 15일 일본측 국제중재재판을 실현하는 연락협의회, 동 변호단발족 (도쿄)
- 23일 ILO전문위원세미나 (도쿄)
- 10월 한국변호사협회잡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논문 게재
- 12일 연립3여당 「종군위안부등 소위원회」 설치 결정 (도쿄)
- 20- 동아시아여성 포럼 (도쿄)
- 11월 8일 연립3여당 「종군위안부등 소위원회」 식자의 공청회 (우에스기씨 외)
- 19일 연립3여당 「종군위안부등 소위원회」 무라야마 안 보류 결정 (JT보도)
- 21일 「무라야마수상은 연초에 이세신궁에서 민간모금 호소 예정」 (요미우리보도)
- 22일 ICJ최종보고서공표. 세계적인 보도
- 동일 일본측 국제중재재판 변호단 수상관저 교섭, 기자회견
- 24일 한국변호사협회회장, 이사의 방일-일변련과의 교류
- 28일 PCA한일변호인단 토론회
- 12월 10일 일변련 국제심포지움 (세계여성회의 준비)
- 12월 일변련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제언」
- 12월 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 용크맨씨 초대 (연기)
- 1995년
- 2월 UN인권위원회
ICJ보고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특별보고자 예비보고서제출, IFOR, 기타 NGO의 활동)
- 3월 UN여성의 지위위원회 (뉴욕)
- 4월-5월 UN현대노예제부회 (제네바)
- 8월 UN인권소위원회
- 9월 UN세계여성회의 (베이징)

일본에서의 지원 활동에 관하여

石川 逸子 이시카와 이즈코

(일본 PCA 연락회, 성과 천황제를 생각하는 회)

1. 연락회 성립과 그 이후

'국제중재재판의 성공과 개인배상의 실현을 위한 연락회'는 올해 9월 15일 발족했습니다. 현재 NCCJ, YWCA, 절제회, '중군위안부'문제 우리여성네트워크, '여성과 인권' Kunitachi 시민회 그룹, 성차별과 천황제를 생각하는 회 등 40여개 단체와 300명 가까운 개인이 참가하였고, 지금도 회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국에서 먼저 제기하기 전에 우리 일본인들이 인식하여 일본정부에게 진상구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했었습니다.

지난 2월 피해자와 정대협 여러분이 동경지점에 고소, 발장을 제출하려고 오셨을 때, 우리들은 특히 우리의 책임을 간절히 느끼고, PCA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6월에는 여성국회의원들과 지식인들이 민간모금 구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아 일본군 '위안부'문제행동네트워크(현재의 PCA연락회는 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조직되었음) 성원들은 그 분들을 몇번 만나고 또 공개서한도 보내는 등 철회를 구한 바 있습니다.

7월 하순에는 무라야마 내각의 '청소년교류센터'안에 반대하여 그 철회와 진실한 사죄, 배상을 구하는 긴급 서명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때 10일도 안되어 1만명의 서명을 받고 수상에게 이를 제출했습니다. 이 서명활동을 끝낸 후에도 또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9월의 연락회 발족후, PCA에 대한 관심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락회는 10월 25일 제2회 집회를 갖고 정대협의 윤미향 간사와 스즈키 변호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또 오는 12월 17일 제 3회 집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중재재판에 관해서 이해를 얻기 위해서 리플렛, 그림엽서 등을 발행했습니다. 또 가명단체는 자기 단체내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 선생님들과 연계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 진실한 해결을 향하여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라고 하는 너무나도 잔인한 전쟁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후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왔다는 큰 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군의 관여를 인정한 후에도 일본정부는 마땅하게 이 문제에 대해 할 것이 없고, 민간모금이라는 수단으로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3의 죄가 아닙니까?

일본정부 외무성에 의하면 개인배상을 하지 않는 이유의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상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에도 보상해야 하는데 너무도 보상에 필요한 금액이 방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액이 방대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면 '작은 악사보다 큰 악사를 하는 것이 이익이 많다'로 하는 터무니없는 교훈을 후세까지 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일본정부의 자세에 반대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실한 해결을 하는 것이 아시아의 형제자매들과 우호 관계를 이루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에게도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길입니다.

일본정부는 일본 국내에서만 통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논리가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월 2일, ICJ에서 보낸 권고문을 일본 외무성은 무시하고 여당의 '위안부문제조사위원회' 성원들에게도 배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가 세계 평화에 대해 의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일본정부는 ICJ최종보고서 권고를 하루빨리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는 요망서를 보냈습니다. (11월 22일자)

나가노, 사쿠라이, 하시모토의 잇따른 대신들의 망언, 학교에 다니는 길에 치마저고리를 찢겨버린 소녀들. 이러한 일들은 다 일본이 국가로서의 진실한 반성도 하지 않고,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된 일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추악한 연관을 끊어야 합니다.

◀ 일본정부가 개인배상을 언제까지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들은 정부가 중재재판에 합의하여 국제법에 의한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재판실현을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

끝으로 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쓴 시집 '부신 꽃들을 위한 Requiem' 중의 시들 중 하나를 읽겠습니다.

소녀 9

石川 逸子

잘라진
당신의 목이
하늘에 뜨고 있습니다.

'도끼꼬'라 멋대로 불리워진
그 소녀

두만강 강변의 '위안소'에
가둬져 있던
소녀

조선말을 썼다고
본을 보이기 위해
일본도로 목을 잘리운
소녀

있어서는 안된 일이
천황의 군대에는 일삼아 있고
'위안소'에 가는 것은 공용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하니

담처럼 목잘라진
소녀의 무덤은
잘려버려진 목이 어느새
머나먼 하늘높이 올라갔답니다.

밝은 일도
흐미하게 너의 목은
하늘에 뜨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어요
왜요? 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순진한 어린 띠 얼굴로

(번역: 유모달)

일본정부의 증재수락에 관한 정세와 앞으로의 전망

오자키 준리

1. 자민당 정권의 붕괴와 그 후의 정권

1993년 7월 18일에 시행된 중의원 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자민당의 장기단독정권은 붕괴되었다.

그 후 자민당과 공산당을 뺀 사회당, 공명당, 신생당, 일본신당, 민사당, 사키가케당, 사민련에 의한 호소카와 일본신당 당수를 수반으로 한 연립다수정권이 탄생했지만 1994년 5월 사회당, 사키가케가 정권을 이탈 하네다 신생당 당수를 수반으로 하는 연립소수정권이 성립되었다. 이 정권도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6월에는 무라야마 사회당 당수를 수반으로 하는 자민, 사회, 사키가케에 의한 연립다수 정권이 현재 일본정국을 담당하고 있다.

11월 21일에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도입에 따른 소선거구 구분할법 등이 성립되어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명당, 신생당, 일본신당, 민사당 등은 [신진당]이라는 신당을 12월중에 결성할 예정이고, 사회당의 일부는 사키가케, 민사당 등과 제 3의 세력으로서 리버탈한 결집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신제도에 기초한 중의원 선거는 내년 이후 언제 실시되어도 이상 없을 정세고, 또 선거가 실시될 경우 새로운 선거제도때문에 선거구의 세력분야가 어떻게 될지 예상 못하고, 여전히 일본정치상황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2. 여당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

무라야마 정권의 연립여당은 6월 29일, 아래와 같은 [새로운 연립정권에 관한 합의사항]을 만들었다.

전후 50년과 국제평화 = 신정권은 전후 50년을 계기로 하여 과거의 전쟁을 반성하고, 미래의 평화로의 결의를 표명하는 국회결의의 채택 등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를 위해 전후 50년 문제에 관해서 협의하는 기관을 국회 및 정부에 설치한다. 전후 50-년을 기념하여 평화를 위한 국제공헌에 도움이 되는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이 합의에 기초하여 여당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 팀을 발족하여 8월 31일에 행해진 이하의 총리대신 담화에 기초하여 그 팀중에 종군위안부 문제 등 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고, 저는 이 기회에 다시 새롭게 마음속으로부터의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이것을 후세에 전함과 동시에 관계제국(諸國) 등과의 상호이해를 한층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 계획은 이러한 심정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또 이상의 정부의 계획과 아울러 이 심정을 국민 여러분에게도 나눠 갖게 하기 위해서 폭넓은 국민참여의 길을 함께 탐구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의 목적은 [정부에 있어서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11월말을 목표로 성안(成案)을 얻어서 프로젝트에 보고하는] 일이었다. 위원회 위원은 사회당 2명, 사きが개 1명, 자민당 3명으로 6명이다.

11월 중순까지 이 소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이가라시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제 주도형으로 민간기금구상을 성안화 하려고 했었는데, 위안부를 중심으로 한 뿌리깊은 반대 등을 이유로 국가의 책임에 관해서 보다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어쨌든 명확한 법적 책임에 기초한 배상은 현재는 정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3. 앞으로의 전망

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소위원회의 정리작업에 즈음하여 지금 다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일본정부는 책임이 있는지 어떤지이다. 이점을 애매하게 한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문제를 다루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되어 오고 있다. ICJ에 의한 최종보고서는 일본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정부로서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두가지 이외에는 없다.

하나는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의 입법화를 당장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재에 합의하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첫번째 방법이 바람직하지만 전쟁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서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본정부는 즉시 두번째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일본정부로 하여금 이 중재에 합의하게끔 하기 위하여도 피해자인 위안부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국제적 여론의 고양이 무엇보다도 필요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한국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바이다.

정대협 PCA 한일변호인단 공동선언문(안)

[1]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로 조직된 정대협 PCA한일변호인단(1994. 11. 28. 현재, 한국 37명, 일본 68명)은 1994. 11. 28. 서울에서 첫 토론회를 갖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행위는 국제법상 비인도적범죄이며,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 범죄는 시효가 없으며 조약으로 면책시키거나 없으므로 일본정부는 현재도 관련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

2.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행위는 일본정부가 “추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녀매매 금지조약”과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ILO 제 29호 조약)”, “陸戰법규관례에 관한 조약” 위반하였고 “노예제를 금지시키는 국제관습법규”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개인에 대하여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3. 일본군 「위안부」 개인배상문제는 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65년 한일협정은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형사처벌부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아가 국가간 조약으로 포기할 수 있는 외교보호권 만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시킬 수 없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만이며

일본군 「위안부」의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권침해 배상책임과 별도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가 계속되게 한데 따른 즉, '불처벌'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5. 한국정부가 나서지도 않고 일본정부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PCA 제소방법은 일본군 「위안부」 개인이 직접 일본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실효성있는 국제적 해결방법임을 확인한다.
6. PCA에 의한 해결이전에 피해자에게 먼저 임시조처로서 생계비,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자금은 ICJ 권고안 대로 1인당 4만불이 적당하다고 본다.
7. 일본군 「위안부」 개인에 대한 피해배상금액은 일본군 「위안부」로 강요된 생활을 할 당시에 입은 손해 뿐만 아니라 전후 50년이 되도록 일본정부가 이들을 방치하고 책임을 방기해오므로써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당해온 신체적, 인격적, 재산적 손해를 모두 감안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2] 이상과 같은 결론에 따라 우리들은 일본과 한국정부 및 국제연합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

(1)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에 관하여 일본정부는 1993. 8. 24. 2차보고서를 발표 후 지속적인 진상조사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더이상 진상조사발표도 하지 않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총 숫자, 정책입안자, 관리, 운영등의 명령체계등 전모에 관한 진상을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

(2)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행위가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죄이고,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정책입안자와 책임자에 대하여 형사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닌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왜곡하는 현재의 민간위로금안의 추진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위한 법적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4) 일본정부가 만약 배상책임을 없다고 생각하거나 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관한 국제법상 판단을 받기 위해 국제법상 권위있는 기구인 PCA에 의한 해결에 합의하여야 한다. 그 합의는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빨리 하여야 한다.

(5) 일본정부는 ICJ의 권고안을 존중하여야 하며, PCA에 의한 해결이전이라도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로서 1인당 미화 4만불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

2.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 (1) 한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진상조사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하며 국내자료를 완전공개하고 일본정부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 (2) 한국정부는 65년 한일협정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포함되지 않았고 전쟁범죄와 같은 형사책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 (3)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PCA에 의한 해결을 권고하여야 한다.
- (4)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등 일본의 전후배상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보리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도록 국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일본의 전후책임을 묻는 정신대대책협의회등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5) 한국정부는 ICJ의 권고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3. 국제연합에 대한 권고

우리들은 국제연합이 ICJ의 권고를 지지해줄 것을 요구한다.